

## 학술연구기금관리규정

**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적립된 학술연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.)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기금)** 학술연구기금은 재단 출연금, 독지가 및 사회단체의 기부금, 연구간접경비 적립금, 기타 교내외 출연금 등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본 대학교에 무상으로 후원된 자금을 말한다.

**제 3 조 (기금의 용도)** 적립된 기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호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교내연구비(타당성 연구비 등)
2.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충 및 유지보수비
3.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
4.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비
5. 기타 학술연구 및 연구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
**제 4 조 (기금의 관리)** 기금은 일정기간 적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한다.

1. 금융기관에 예탁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3. 기타 연구기금 증식을 위한 운용

**제 5 조 (회계처리)**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처리한다.

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별도계좌에 예치하여 사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.(개정 2015. 5. 1)

③ 기금의 집행은 연구비관리부서에서 정하는 집행절차에 따른다.

④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은 원금에 편입하여 관리한다.

**제 6 조 (주관부서)** 이 규정에 관련된 사무는 연구비관리부서에서 관장한다.

**제 7 조 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5. 5. 1)

**제 1 조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** 조직개편에 따라 '재무처'를 '사무처'로, '경리팀'을 '회계팀'으로 한다.